

대전고등법원 2022. 1. 26 선고 2021나1347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현 담당변호사 이선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A

변 론 종 결 2021. 12. 1.

판 결 선 고 2022. 1. 26.

제1 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6. 24. 선고 2021가합5045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주식회사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2019. 12. 30. 체결된 각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12. 30. 접수 C로

마친 각 질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B가 금융기관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채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

보증계약일	보증금액 (단위: 원)	대출금액 (단위: 원)	금융기관	보증기한
2018. 6. 5.	114,950,000	121,000,000	DX은행	2023. 6. 5.
2018. 6. 12.	28,500,000	30,000,000	DX은행	2023. 6. 12.
2018. 11. 29.	180,000,000	200,000,000	DW은행	2020. 11. 27.
2018. 11. 29.	90,000,000	100,000,000	DW은행	2020. 11. 27.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원고와 주식회사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식회사 B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의 손해금, 보증채무의 이행에 든 비용,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미납한 보증료, 연체 보증료 및 추가 보증료, 채권의 집행 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원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10조 등).

3) 주식회사 B는 2020. 5. 7. DW은행에 대한 각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2020. 6. 9.

DX은행에 대한 각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이에 DW은행과 DX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0. 9. 7. DW은행에 275,577,048원을, 2020. 10. 15. DX은행에 143,168,017원을 각 대위변제함으로써 합계 418,745,0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위 각 대위변제에 따라 주식회사 B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증계약 제10조 등에서 약정한 대위변제금, 법적 절차 비용 및 추가 보증료 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를 합산하면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424,013,581원(= 대위변제금 418,745,065원 + 법적 절차 비용 4,402,576원 + 추가 보증료 865,940원)이다.

나. 주식회사 B의 채무초과 및 피고와의 질권설정계약

1)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서비스표권(이하 '이 사건 각 지적재산권'이라 한다)의 등록권리자로서, 원고에 대한 위 채무 이외에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여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주식회사 B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가 특별히 다투지 아니하고 있어, 주식회사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주식회사 B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한 점, ②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투자를 요청하면서 금융권 채무가 약 45억 원, 비금융권 채무가 약 2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는 점, ③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매출채권이 약 66억 원이라고 하면서도 그중 일부는 채무자의 폐업으로 대손상각 처리 예정이라고 하였고, 나머지 매출채권도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점(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④ 주식회사 B가 피고로부터 200억 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다른 채무가 소멸되거나 적극재산이 증가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의하더라도, 주식회사 B의 채무초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는 2019. 9. 및 2019. 12. 주식회사 B에 합계 500억 원(1차 200억 원, 2차 300억 원)을 투자하고, 일정 비율(60%)의 수익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투자 원금을 상환받기로 약정하였고, 투자

원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주식회사 B 주주들(DZ, EA, EB 등)의 주식 및 이 사건 각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피고와 주식회사 B가 2019. 12. 30.경 이 사건 각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한 질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

3) 주식회사 B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특허청 2019. 12. 30. 접수 C로 채권액을 500억 원으로 하는 각 질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등록’이라 한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6 내지 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주식회사 B의 사해의사

1)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2018. 6. 내지 2018. 11. 체결되었고, 주식회사 B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채무 이자 지급 연체는 2020. 5. 내지 2020. 6.에 있었으며, 원고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위변제가 2020. 9. 내지 2020. 10.에 있었는데,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2019. 12.에 있었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주식회사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보다는 늦게 발생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 존재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B가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에 대하여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채무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채 이자만 변제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그 보증계약에 따른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것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주식회사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책임재산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이 사건 각 지적재산권에 관하여 피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질권을 설정하여 주고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지적재산권의 담보 가치 일부를 은닉 또는 소비하게 쉽게 현금화하여 그 공동담보의 부족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는 이상, 그 행위를 한 주식회사 B는 이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사해의사도 인정된다.

나. 피고의 선의 여부

1) 피고는 2019. 5.경 주식회사 B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고 여러 사정을 검토한 다음 2019. 9. 및 2019. 12. 주식회사 B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3)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당시 피고는 악의였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등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는 주식회사 B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을 당시부터 주식회사 B가 상당한 채무(금융권 채무 약 45억 원, 비금융권 채무 약 20억 원)를 부담한 상태에서 그 채무의 변제 등 회사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피고의 투자를 요청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점(을 제2호증), ② 피고는 주식회사 B에 금원을 투자하고 그 사업에 따라 상당한 비율(60%)의 수익을 지급받기로 하면서도, 투자 원금도 보장받기로 약정하고 그에 대한 담보까지 요구하였는데(을 제6, 7, 8, 11, 12, 13호증), 이는 회사의 사업성에 주목한 투자로서는 다소 이례적인 내용인 점, ③ 피고는 투자 원금 상환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각 지적재산권 이외에 주식회사 B의 주요 주주(DZ, EA,

EB) 소유 주식에 대하여도 질권을 설정받기로 하였고, 주식회사 B의 경영 위기 발생 시 질권설정 대상 주식을 피고가 양수하기로 합의하였는데(을 제7, 8, 11, 13호증), 이는 투자 원금 상황이 곤란할 경우를 예상하고, 원금 상황 대신 주식회사 B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안까지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이미 상당한 채무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그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아니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 투자 원금 상황을 위한 담보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어, 악의 추정을 반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주식회사 B에게 이 사건 질권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박선준, 판사 정정미, 판사 이흥주

[별지]

목록

<특허권>

1.

특	허	번	호	D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E	출원번호		F
	공고연월일		G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3년08월02일	청구범위의 항수		15
	분류기호		G06K 9/70, G06K 9/68, G06T 7/00			
	발명의 명칭		H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3년05월07일			
						I 등록

2.

특		허		번		호		J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K		출원번호		L			
	공고연월일		M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3년09월17일		청구범위의 항수		18			
	분류기호		G06K 9/58, G06K 9/00							
	발명의 명칭		N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3년05월22일							
			O 등록							

3.

특 허 번 호		P		
---------	--	---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Q	출원번호	R
	공고연월일	S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3년11월21일	청구범위의 항수	19
	분류기호	G06K 9/68, G06K 9/62, G06K 9/58		
	발명의 명칭	T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3년08월22일		
	U 등록			

4.

특 허 번 호	V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W	출원번호	X
	공고연월일	Y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4년12월12일	청구범위의 항수	18
	분류기호	G06K 9/00		
	발명의 명칭	Z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4년04월04일		
	AA 등록			

5.

특 허 번 호	AB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AC	출원번호	AD
	공고연월일	AE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7년02월28일	청구범위의 항수	2
	분류기호	G06K 9/00, G08B 25/10		
	발명의 명칭	AF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5년03월16일		
	AG 등록			

6.

특	허	번	호	AH
---	---	---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AI	출원번호	AJ
	공고연월일	AK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9년02월15일	청구범위의 항수	9
	분류기호	G06K 9/00, G06K 9/62		
	발명의 명칭	AL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5년11월02일		
	AM 등록			

7.

특	허	번	호	AN
---	---	---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A0	출원번호	AP
	공고연월일	AQ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7년07월04일	청구범위의 항수	2
	분류기호	H04L 12/28, H04L 29/06, H04L 29/08, G07C 9/00, G06K 9/00		
	발명의 명칭	AR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6년01월13일		
	AS 등록			

8.

특	허	번	호	AT
---	---	---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AU	출원번호	AV
	공고연월일	AW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9년03월15일	청구범위의 항수	5
	분류기호	G07C 9/00, G08B 13/196, G08B 27/00		
	발명의 명칭	AX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7년06월13일
		AY 등록

9.

특	허	번	호	AZ
---	---	---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BA	출원번호	BB
	공고연월일	BC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8년08월20일	청구범위의 항수	2
	분류기호	B60R 25/04, B60R 25/25, B60R 25/015, G06K 9/00, G06F 21/32		
	발명의 명칭	BD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8년06월14일		
				BE 등록

10.

특	허	번	호	BF
---	---	---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1번	출원연월일	BA	출원번호	BG
	공고연월일	BH	공고번호	-
	특허결정(심결)연월일	2018년11월28일	청구범위의 항수	4
	분류기호	G07C 9/00		
	발명의 명칭	BI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8년06월14일		
				BJ 등록

<실용신안권>

11.

실용신안 등록번호	BK
-----------	----

[권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	---------

출원연월일	BL	출원번호	BM
원출원연월일	BN	원출원번호	BO(특허)
공고연월일	BP	공고번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7년02월28일	청구범위의 항수	4
분류기호	G06K 9/00, G07C 9/00	등록의 구분	심사등록
고안의명칭	BQ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5년01월30일		
AG 등록			

<디자인권>

12.

디자인 등록번호		BR		
[권리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출원연월일	BS	출원번호	BT
	공고연월일	BU	공고번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08월01일	등록의 구분	심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건		
	디자인의대상이 되는물품	일련번호	물품류	물품
		M001	제14류	안면인식기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6년03월11일			BV 등록

13.

디자인 등록번호		BW		
[권리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출원연월일	BS	출원번호	BX	
공고연월일	BU	공고번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08월01일	등록의 구분	심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건			
디자인의대상이 되는물품	일련번호	물품류	물품	
	M001	제14류	안면인식기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6년03월11일			
BV 등록				

14.

디자인 등록번호	BY
----------	----

[관리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출원연월일	BS	출원번호	BZ
	광고연월일	BU	광고번호	-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08월22일	등록의 구분	심사
	디자인의 수	기본디자인 1건		
	디자인의대상이 되는물품	일련번호	물품류	물품
		M001	제08류	도어 외측용 디지털 도어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36년03월11일		
BV 등록				

<상표권>

15.

상표등록번호		CA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CB	
	출원번호	CC	
	출원광고연월일	CD	
	광고번호	CE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4년10월15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CF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4년10월22일	
	지정상품	제09류 : 얼굴인식용 컴퓨터 프로그램, 얼굴인식용 보안단말기, 얼굴인식용인식시스템장치,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전기식 모니터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CCTV 카메라, 자동현금인출기(ATM), 디지털도어록, 자동차시동장치용 케이블, 복사기, 컬러프린터, 프린터 및 그 부속품	

16.

상표등록번호	CG	
관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CB	
출원번호	CH	
출원공고연월일	CD	
공고번호	CI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4년10월15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CF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4년10월22일	
지정상품	제09류 : 얼굴인식용 컴퓨터 프로그램, 얼굴인식용 보안단말기, 얼굴인식확인시스템장치,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전기식 모니터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CCTV 카메라, 자동현금인출기(ATM), 디지털도어록, 자동차시동장치용 케이블, 복사기, 컬러프린터, 프린터 및 그 부속품	

17.

상표등록번호	CJ
--------	----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CK	
출원번호	CL	
출원공고연월일	CM	
공고번호	CN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09월28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BV 등록	등록공고연월일 BU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6년11월01일	
지정상품	제09류 : 얼굴인식용 컴퓨터 프로그램, 얼굴인식용 보안단말기, 얼굴인식확인시스템장치,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전기식 모니터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CCTV 카메라, 자동현금인출기(ATM), 디지털도어록, 자동차시동장치용 케이블, 복사기, 컬러프린터, 프린터 및 그 부속품, 보안 통신 장치, 홈네트워크용 전자보안시스템, 전자식 감시용 소음탐지기, 소음 및 진동 제어 장치, 소음센서, 네트워크 보안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18.

상표등록번호		CO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CK	
	출원번호	CP	
	출원공고연월일	CM	
	공고번호	CQ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09월28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BV 등록	등록공고연월일 BU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6년11월01일	
	지정상품	제09류 : 얼굴인식용 컴퓨터 프로그램, 얼굴인식용 보안단말기, 얼굴인식확인시스템장치,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전기식 모니터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CCTV 카메라, 자동현금인출기(ATM), 디지털도어록, 자동차시동장치용 케이블, 복사기, 컬러프린터, 프린터 및 그 부속품, 보안 통신 장치, 홈네트워크용 전자보안시스템, 전자식 감시용 소음탐지기, 소음 및 진동 제어 장치, 소음센터, 네트워크 보안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엔나 분류코드	260705, 260418, 260118, 270907	

19.

상표등록번호		CR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CS	
	출원번호	CT	
	출원공고연월일	CU	
	공고번호	CV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11월01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CW 등록	등록공고연월일 CX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6년11월18일	
	지정상품	제09류 : 얼굴인식 보안 장비, 얼굴인식 판독기, 얼굴인식 디지털 도어록장치, 얼굴인식용 보안단말기, 얼굴인식확인시스템장치, 디지털도어록, 출입통제용 유무선도어록장치	

20.

상표등록번호		CY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CZ		
출원번호	DA		
출원공고연월일	DB		
공고번호	DC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11월23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DD 등록	등록공고연월일	DE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7년01월11일		
지정상품	제09류 : 얼굴인식 보안 장비, 얼굴인식 판독기, 얼굴인식 디지털 도어록장치, 얼굴인식용 보안단말기, 얼굴인식확인시스템장치,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전기식 모니터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CCTV카메라, 자동현금인출기(ATM), 디지털도어록, 프린터 및 그 부속품, 보안 통신 장치, 홈네트워크용 전자보안시스템, 전자식 감시용 소용탐지기, 소용 및 진동 제어 장치, 네트워크 보안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출입통제용, 유무선도어록장치		

21.

상표등록번호		DF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DG
	출원번호	DH
	출원공고연월일	AE
	공고번호	DI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7년09월01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DJ 등록
	등록공고연월일	DK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7년11월01일
지정상품	제09류 : 얼굴인식 보안 장비, 얼굴인식 판독기, 얼굴인식 디지털 도어록장치, 얼굴인식용 보안단말기, 얼굴인식확인시스템장치,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전기식 모니터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용 프로그램, CCTV카메라, 자동현금인출기(ATM), 디지털도어록, 프린터 및 그 부속품, 보안 통신 장치, 홈네트워크용 전자보안시스템, 전자식 감시용 소용탐지기, 소용 및 진동 제어 장치, 네트워크 보안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생체인식 장치, 자동 출입보안장치

22.

상표등록번호		DL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DG	
	출원번호	DM	
	출원공고연월일	AE	
	공고번호	DN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7년09월01일	
	상품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DJ 등록	등록공고연월일 DK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7년11월01일	
지정상품	제35류 : 얼굴인식 보안장비 도매업, 얼굴인식 보안장비 소매업, 얼굴인식 판독기 도매업, 얼굴인식 판독기 소매업, 얼굴인식 디지털 도어록 장치 도매업, 얼굴인식 디지털 도어록 장치 소매업, 얼굴인식확인시스템 장치 도매업, 얼굴인식확인시스템 장치 소매업,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도매업, 전기 및 전자식 비디오 감시설비 소매업, 전기식 모니터장치 도매업, 전기식 모니터장치 소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도매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소매업, 생체인식장치 도매업, 생체인식장치 소매업, 자동 출입보안장치 도매업, 자동 출입보안장치 소매업,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전기통신에 의한 통신판매중개업		

<서비스표권>

23.

서비스표 등록번호		DO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CK	
	출원번호	DP	
	출원공고연월일	DQ	
	공고번호	DR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10월05일	

상표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BV 등록	등록공고연월일 BU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6년11월01일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제42류 : IT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 인터넷보안프로그램제공업, 보안네트워크조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보안관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개발 및 데이터처리용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보안상당업	

24.

서비스표 등록번호	DS
-----------	----

권리란

표시번호	등록사항	상표
출원연월일	CK	
출원번호	DT	
출원공고연월일	DU	
공고번호	DV	
등록결정(심결)연월일	2016년10월20일	
상표류구분수	1	
상표권의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CW 등록	등록공고연월일 CX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6년11월18일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제42류 : IT보안소프트웨어 개발업, 인터넷보안프로그램제공업, 보안네트워크조작용 소프트웨어 개발업, 보안관리용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 개발 및 데이터처리용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프로그래밍 및 컴퓨터프로그램 관리업, 컴퓨터프로그램 제작업, 컴퓨터프로그램개발업, 컴퓨터보안상당업	
비연나 분류코드	260705, 260418, 260118, 270907	

-끝-

